

담양군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예고

「담양군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3. 13.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 담양군 공공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 공공 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개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공공자금 운영 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공공 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3. ~ 3. 17.(5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예고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3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공공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 공공 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 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 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담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유희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이하 “관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계획
2. 공공 자금의 배정·집행 계획
3. 일별·월별 공공 자금 소요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 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 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를 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 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 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 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 수입 비율
2. 평균 이자 수익률
3.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
4. 금융 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수입 실적

② 군수는 공공 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 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 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군수는 「담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 운용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 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 잔액

3. 군 이자 수입 총액

4. 그 밖에 군수가 금고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 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 기관에 군의 공공 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